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 추가 〉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15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복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 추가	2
 [참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구조문대비표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주희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4.

다. 회 부 일 : 2025.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17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 추가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제17호).

현 행	개 정 안
第33條(審議規程) ① (생 략)	第33條(審議規程) ① (현행과 같음)
② 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7.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u>
<u>17.</u> (생 략)	<u>18.</u> (현행 제17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도록 하면서,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다양한 공익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¹⁾.
- 그런데, 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건강·의료에 관한 정보는 일반 시청자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국민의 건강관리 및 치료 방법 선택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상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1)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 특히, 최근 건강·의료 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전문가 발언의 형식을 빌려 유통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현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방송의 질적 저하를 넘어 시청자의 건강권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규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건강·의료 정보의 심의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건강·의료 정보 방송의 정확성·책임성을 강화하며, 시청자의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의 중복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난 2025년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 변화하는 시대에 흐름에 맞는 사항으로 수정·보완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14호

에 “생명 존중과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률 제15442호)을 의결하였고, 2026년 2월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상황임([참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구조문대비표)

-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은 건강 정보의 전달 방식, 의료 정보의 정확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의 관리 등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의결될 경우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방송에서의 건강 관련 정보 및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의 근거가 상당 부분 확보될 것이므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방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한국방송협회**는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제42조(의료행위 등)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내용 △위험성과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내용 등 거짓 의료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방송사들은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프로그램 방영 전 자체심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 방송심의규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료행위 등) ①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
2.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또는 이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
3. 위험성·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내용
4. 질병 등에 관하여 시청자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내용
5.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 등을 비교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
7.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
8.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홈페이지 등을 고지하는 내용

② 방송은 의료행위 등을 목적으로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담만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상담자 또는 시청자가 증상에 따른 상담결과를 확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 중 실시간 의학상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 또는 약사(藥師)를 선정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자격과 전문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의료인 또는 약사를 소개할 때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경력·전문 과목 등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한 특정인의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시청자가 이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KBS, 종편4사, 연합뉴스TV,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현행 심의규정에 관련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있어, 개정안이 중복 규제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YTN은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심의규정에 이를 명시하여 심의 근거와 예측성을 높이는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심의규정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학 전문성 심의 절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6

참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 · 구조문대비표

※ 본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대안으로 제안(2025.12.10.)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2025.12.18.)된 상태임.

현행	개정안
第32條(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放送・中繼有線放送 및 電光板放送의 내용과 그 밖에 電氣通信回線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情報중 放送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情報의 내용이 <u>공정성과 공공성을</u>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公的 責任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放送 또는 유통된 후 審議・議決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32條(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 심의) ----- ----- ----- ----- ----- ----- <u>공공성을</u>----- ----- ----- ----- -----.
第33條(審議規程) 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放送의 <u>공정성 및 공공성을</u> 審議하기 위하여 放送審議에 관한 規程(이하 “<u>審議規程</u>”이라 한다)을 제정・公表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第33條(審議規程) ① ----- -----<u>공공성 및 공적 책임을</u>----- ----- ----- -----. ② ----- -----

다.

1. (생 략)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생 략)

6. 국제적 友誼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放送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報道・論評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1. (현행과 같음)

2. 개인・가족・공동체 등 사회 구성원의 보호 및 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국제적 연대와 평화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권익 증진과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

8.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사항

9. 문화의 창달과 다양성 구현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바른 언어 사용에 관한 사항

12. 환경 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13. 소비자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u>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u> 15. (생 략) <u>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 · 공익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신 설></u> <u>17. (생 략)</u> ③ ~ ⑥ (생 략)	<u>14. 생명 존중과 국민건강 증진 에 관한 사항</u> 15. (현행과 같음) <u>16. 방송광고의 허위성 및 소비 자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u> <u>17. 재난·위기 상황에서의 정 확한 정보 제공과 피해자 보 호에 관한 사항</u> <u>18.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에 관 한 사항</u> <u>19. (현행 제17호와 같음)</u> ③ ~ ⑥ (현행과 같음)
--	--